



2022.04.

국회에산정책처 | 재정동향&이슈 | 제19호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수정의결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

해외재정동향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발표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 「NABO 재정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02-6788-37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 1 통권 제19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7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수정의결 / 8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13
-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 / 17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23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 26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 29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 33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 36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확정 / 41
- 2022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 4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49
- 공공기관의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 현황 / 52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발표 / 57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 60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 64

해외재정동향 / 67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 68
-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발표 / 71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 총수입·총지출
-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22년도 2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0조원 증가한 106.1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상승한 19.2%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금수입이 3.9조원 감소한 반면,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각각 12.2조원, 0.7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2년도 2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1.4조원 증가한 121.2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3%p 증가한 19.4%

-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지출 및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4조원 증가, 기금 지출은 11.5조원 증가

2021 · 2022 회계연도 총수입 · 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대비 증가	
	추경 (A)	결산	2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D)	2월 (당월)	2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514.6	570.5	97.1	18.9	553.6	40.8	106.1	19.2	9.0	0.3
• 국세수입	314.3	344.1	57.8	18.4	343.4	20.3	70.0	20.4	12.2	2.0
• 세외수입	29.3	30.5	8.2	27.8	26.1	7.1	8.9	34.1	0.7	6.3
• 기금수입	171.0	195.8	31.2	18.2	184.1	13.4	27.2	14.8	△3.9	△3.4
(사회보장성기금) ¹⁾	99.5	124.5	20.4	20.5	104.8	7.8	15.8	15.1	△4.5	△3.4
◆ 총지출	604.9	600.9	109.8	18.2	624.3	64.9	121.2	19.4	11.4	1.3
• 예산	409.7	398.9	80.8	19.7	417.2	41.6	80.6	19.3	△0.1	△0.4
- 일반회계	348.8	339.7	68.6	19.7	354.4	35.3	71.1	20.0	2.4	0.4
- 특별회계	60.9	59.1	12.1	19.9	62.8	6.4	9.6	15.3	△2.5	△4.6
• 기금	195.2	199.6	29.1	14.9	207.1	23.2	40.5	19.6	11.5	4.7
(사회보장성기금)	63.2	64.4	10.8	17.1	64.8	5.3	10.9	16.9	0.1	△0.2
• 세입세출외	-	2.5	0.0	-	-	0.0	0.0	-	0.0	-

주: 1) 국민연금 · 사회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2022.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2년도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5.1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4조원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20.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3조원 개선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원 증가하였으나,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11.4조원)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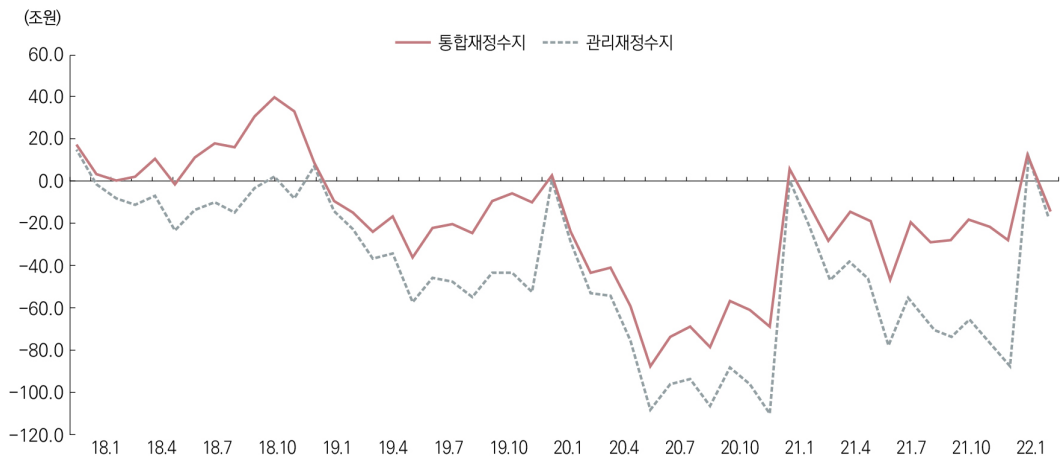
2021·2022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대비 증가	
	추경 (A)	결산	2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D)	2월 (당월)	2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514.6	570.5	97.1	18.9	553.6	40.8	106.1	19.2	9.0	0.3
◆ 총지출(B)	604.9	600.9	109.8	18.2	624.3	64.9	121.2	19.4	11.4	1.3
◆ 통합재정수지(C=A-B)	△90.3	△30.3	△12.7	-	△70.8	△24.1	△15.1	-	△2.4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36.2	60.1	9.6	-	40.0	2.5	4.9	-	△4.6	-
◆ 관리재정수지(E=C-D)	△126.6	△90.4	△22.3	-	△110.8	△26.6	△20.0	-	2.3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2022.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2022.4.)

국가채무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939.1조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819.2조원 대비 119.9조원 증가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1년 45.6%로, 2020년 42.4% 대비 3.2%p 상승

2020·2021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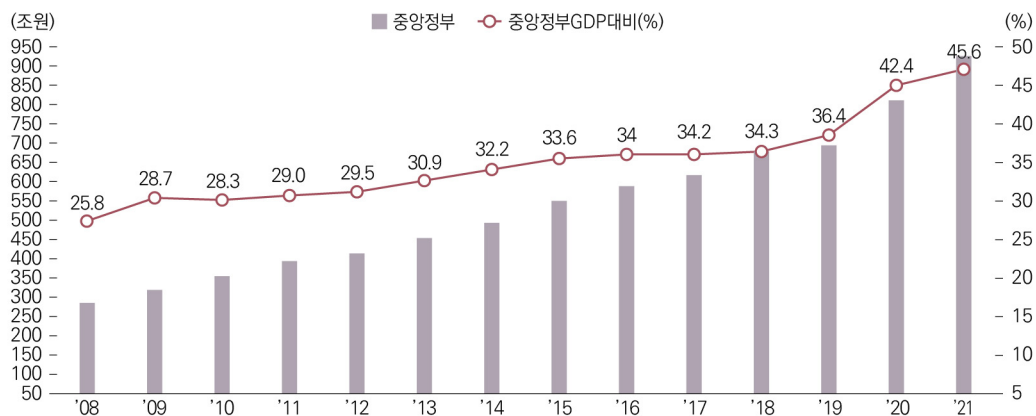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 분	2019	2020		2021(잠정)	
	결산(A)	결산(B)	전년(B-A)	결산(C)	전년(C-B)
◆ 중앙정부 채무	699.0	819.2	120.2	939.1	119.9
• 국채 ¹⁾	696.3	815.2	119.0	937.0	121.8
- 국고채권	611.5	726.8	115.2	843.7	116.9
- 국민주택채권	76.4	78.9	2.5	82.2	3.3
- 외평채권(외화)	8.3	9.5	1.3	11.2	1.7
• 차입금	2.6	3.3	0.7	2.0	△1.3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0.6	0.1	△0.6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수정의결
-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
-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확정
- ◆ 2022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 공공기관의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 현황
-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발표
-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수정의결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2022. 2. 21.)

- 정부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2022.1.24.)한지 2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이 원안가결(2022.2.19.)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맹성규의원 외 171인 발의)을 의결

추경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정부는 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②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역 보강, ③ 2021년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신속히 환류한다는 목적으로 추경안 편성
- 추경안 규모 및 재원
 - 추경안 규모는 총 14.0조원이며, 재원은 국채발행액 11.3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7조원으로 구성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14.0	- 국채 발행	11.3
		-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7
합 계	14.0	합 계	14.0

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편성목적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방역 보강 1.5조원,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 분	주요 내용	규모
소상공인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320만개×300만원)	9.6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보	1.9
	소 계	11.5
방역 보강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0.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0.6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재원 확보	0.5
	소 계	1.5
예비비 보강	예측하지 못한 지출소요 대응	1.0
총규모		14.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1.21.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자가진단키트 보급 등을 위해 정부안 14.0조원보다 2.9조원 증액한 16.9조원으로 의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2.9조원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3조원, 기금재원 0.6조원으로 조달할 계획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구 분	세출증액 규모	재 원			
		계	국채발행	기금재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경안(A)	14.0	14.0	11.3	2.7	-
증 액(B)	2.9	2.9	-	0.6 ¹⁾	2.3 ²⁾
국회확정(A+B)	16.9	16.9	11.3	3.3	2.3

주: 1)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예수금 0.3조원 증액,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잔액 0.3조원 활용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조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5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500억원

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세출·지출 국회 심의결과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증액,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예비비 0.4조원 감액

세출·지출 국회 심의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추경안 (증액분)(A)	증감(B)	국회확정 (A+B)	비 고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소상공인 지원	11.5	1.3	12.8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	0.7	0.7	
방역 보강		1.5	1.3	2.8	
예비비 보강		1.0	△0.4	0.6	
합 계		14.0	2.9	16.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2.21.

● 국회 심의결과 주요 증액내역

- ①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320만개 → 332만개), ②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80% → 90%) 및 대상 확대,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④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급, 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⑥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국회 심의결과 주요 증액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증액 항목	부처	주요 증액사유	추경안 (증액분)(A)	증감(B)	국회확정 (A+B)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금	중기부	•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 완화 •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96,000	3,600	99,6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부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80% → 90%) •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	19,000	9,500	28,500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고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긴급고 용안정지원금 지급	-	4,094	4,094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원	고용부· 국토부	•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노선버 스 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급	-	1,623	1,623
	문화예술인 지원	문체부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	864	864
	돌봄 지원	복지부· 고용부	• 요양보호사에게 수당 한시 지원 •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	-	851	851
방역 보강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질병청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확충	4,881	9,740	14,621
	자가진단키트 지원	복지부· 질병청	• 어린이집 영유아 등에게 자가진단키트 지원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진단키트 확충	-	2,033	2,033
	방역인력 지원	질병청	•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기간 연장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지원 연장	-	660	66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2022.2.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2.21.



- 방역보강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 의결

국회 심의결과 감액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명	부처	감액사유	추경안 (증액분)(A)	증감(B)	국회확정 (A+B)
예비비 보강	예비비 (목적예비비)	기재부	방역보강 예산 증액으로 예비재원 소요 감소	10,000	△4,000	6,0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2022.2.21

- 재정총량 및 국가채무
 - (총수입) 본예산 및 추경안과 동일한 553.6조원
 - (총지출) 본예산 대비 16.6조원, 추경안 대비 2.6조원 증액된 624.3조원
 - (통합재정수지) △70.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6.6조원, 추경안 대비 △2.6조원 확대 전망
 - (관리재정수지) △110.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6.6조원, 추경안 대비 △2.6조원 확대 전망
 - (국가채무)(D1) 1,075.7조원으로, 추경안 기준과 동일하고 본예산 대비 11.3조원 증가할 전망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년도 본예산(A)	2022년도 제1회 추경안(B)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C)	본예산 대비 증감 (C-A)	추경안 대비 증감 (C-B)
총수입	553.6	553.6	553.6	0	0
총지출	607.7	621.7	624.3	16.6	2.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54.1 (△2.5)	△68.1 (△3.2)	△70.8 (△3.3)	△16.6 (△0.7)	△2.6 (△0.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4.1 (△4.4)	△108.2 (△5.0)	△110.8 (△5.1)	△16.6 (△0.7)	△2.6 (△0.1)
국가채무(D1) (GDP 대비)	1,064.4 (50.0)	1,075.7 (50.1)	1,075.7 (50.1)	11.3 (0.1)	0

주: 2022년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산정할 때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1.6.)에 따른 경상성장률 전망치(2022년 4.2%)를 적용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추경예산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산정할 때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2021.12.)에 따른 경상성장률 전망치(2022년 4.6%)를 반영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추경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부대의견 내용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한시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되,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1년 초과세수 여력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예탁금을 확대한 것과 관련, 각 기금관리주체와 기획재정부는 예탁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을 작성하여 2022년 4월 임시국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함에 있어서 직종별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금번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2022. 4. 5.)

- 국가결산보고 체계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6조 내지 제61조, 「국가회계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계획
 - 정부는 2022년 4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친 후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세입·세출 결산내역

- 총세입·세출 결산 개요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524.2조원, 총세출은 496.9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이 발생함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 계	524.2	496.9	27.3	4.0	23.3
일반회계	438.4	417.7	20.6	2.6	18.0
특별회계	85.8	79.1	6.7	1.3	5.3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은 524.2조원으로 예산액 506.7조원 대비 17.5조원(3.5%)이 초과수입 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에서 예산 대비 29.8조원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예산 대비 12.3조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2021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 실적 (A)	2021년		2021예산대비 (C-B)	2020대비 (C-A)
		예 산(B)	실 적(C)		
총세입	465.5	506.7	524.2	17.5	58.7
국세수입	285.5	314.3	344.1	29.8	58.5
세외수입	180.0	192.4	180.1	△12.3	0.1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출은 예산현액 509.2조원의 97.6%인 496.9조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1조원이 증가(9.5%)된 규모임

2021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0 실적 (A)	2021			2020 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실적 (C)	집행률 (C/B)*100	
총세출	453.8	509.2	496.9	97.6	43.1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총수입·총지출 결산(재정수지)

- 2021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5.9조원 증가한 570.5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4.0조원 감소한 600.9조원을 집행하였음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59.9조원 개선된 30.4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36.1조원 개선된 90.5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2021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0 결산 (A)	2021		2021 추경대비 (C-B)	2020 대비 (C-A)
		추 경(B)	결 산(C)		
I. 총수입	478.8	514.6	570.5	55.9	91.7
II. 총지출	549.9	604.9	600.9	△4.0	51.0
III. 통합재정수지(I - II)	△71.2	△90.3	△30.4	59.9	40.8
IV.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8	36.2	60.1	23.9	19.3
V. 관리재정수지(III - IV)	△112.0	△126.6	△90.5	36.1	21.5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

2.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른 2021년 말 국가채무는 967.2조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120.6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3.2%p 상승하였음('20년: 43.8% → '21년: 47.0%)
 - (국가채무의 구성)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채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96.9%(937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채무 증가요인) 국가채무가 2020년 대비 120.6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121.8조원) 때문임.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및 경기 회복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제시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결산 (A)	2021		2021 추경대비 (C-B)	2020 대비 (C-A)
		추 경(B)	결 산(C)		
국 가 채 무	846.6	965.3	967.2	1.9	120.6
(GDP 대비)	(43.8)	(47.3)	(47.0)	(△0.3)	(3.2)
◦ 중앙정부	819.2	937.8	939.1	1.9	120.0
- 국 채	815.2	935.5	937.0	1.6	121.8
-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4.0	2.3	2.1	△0.2	△1.9
◦ 지방정부 채무	27.5	27.5	28.1	0.6	0.6

주: 2021년 지방정부채무는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잠정치(지방자치단체 결산 이후 확정)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무제표

- 2021회계연도말 기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39.9조원, 부채는 2,196.4조원이고, 순자산(자산-부채)은 643.5조원임
 - 자산은 전년 대비 352.8조원(14.2%), 부채는 전년 대비 214.7조원(10.8%)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8.1조원(27.3%)이 증가함

자산·부채 구성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1 (A)	2020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산합계(a)	2,839.9	2,487.1	352.8	14.2
Ⅰ. 유동자산	566.0	504.0	62.0	12.3
Ⅱ. 투자자산	1,167.9	1,015.3	152.6	15.0
Ⅲ. 일반유형자산	705.6	604.1	101.5	16.8
Ⅳ. 사회기반시설	382.6	347.9	34.7	10.0
Ⅴ. 무형자산	2.5	2.0	0.5	25.0
Ⅵ. 기타비유동자산	15.3	13.8	1.5	10.9
부채합계(b)	2,196.4	1,981.7	214.7	10.8
Ⅰ. 유동부채	187.9	167.9	20.0	11.9
Ⅱ. 장기차입부채	756.1	658.5	97.6	14.8
Ⅲ. 장기충당부채	1,199.4	1,102.6	96.8	8.8
Ⅳ. 기타비유동부채	53.0	52.7	0.3	0.6
순 자 산(a-b)	643.5	505.4	138.1	27.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고려할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6.0%에서 37.6%로 1.6%p 증가했으나, 2020년은 43.8%로 전년 대비 6.2%p, 2021년은 47.0%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함
 -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자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동향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을 운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되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업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정부재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적립금 투자 수익 등으로 조달되며, 2021년 8대 사회보험 수입은 238조 5,385억원 규모로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10.8% 증가

8대 사회보험 수입: 2017~2021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590,925	617,512	662,516	723,935	940,440	12.3
공무원연금	126,000	134,560	148,537	155,930	156,647	5.6
군인연금	16,354	17,228	18,073	18,894	19,190	4.1
사학연금	56,636	55,447	59,603	62,095	75,895	7.6
고용보험	101,362	107,696	118,638	198,358	200,074	18.5
산재보험	72,895	79,951	80,672	82,877	95,277	6.9
건강보험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5
노인장기요양보험	38,777	46,272	57,991	74,449	92,941	24.4
합 계	1,582,939	1,679,825	1,826,673	2,050,724	2,385,385	10.8

자료: 각 소관부처

- 사회보험의 지출은 보험급여,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 8대 사회보험 지출은 172조 9,568억원 규모로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10.0% 증가

8대 사회보험 지출: 2017~2021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197,637	214,375	235,121	264,540	299,440	10.9
공무원연금	148,820	157,366	169,100	181,574	189,047	6.2
군인연금	30,660	32,208	33,646	34,482	35,331	3.6
사학연금	42,174	44,196	47,402	51,637	54,545	6.6
고용보험	94,607	115,778	139,515	204,653	210,577	22.1
산재보험	53,078	59,509	64,496	70,771	80,083	10.8
건강보험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7.9
노인장기요양보험	42,866	52,960	64,852	74,110	83,853	18.3
합 계	1,182,755	1,299,329	1,463,018	1,619,438	1,729,568	10.0

자료: 각 소관부처

- 보험급여 등 장래 지출에 대비한 사회보험 적립금이 2021년 1,040조 7,544억원 규모로 2017~2021년 동안 10.4% 증가하였으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은 각각 13.8%, 0.6%, 6.4% 감소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단위: 억원, %)

구 분	재정수지					적립금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393,288	403,137	427,395	459,395	641,000	6,216,422	9,487,194	11.1
공무원연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109,506	151,752	8.5
군인연금	△14,306	△14,980	△15,573	△15,588	△16,141	11,676	13,483	3.7
사학연금	14,462	11,251	12,201	10,458	21,350	183,486	260,433	9.1
고용보험	6,755	△8,082	△20,877	△6,295	△10,503	102,544	56,487	△13.8
산재보험	19,817	20,442	16,177	12,106	15,194	158,470	222,222	8.8
건강보험	7,077	△1,778	△28,243	△3,531	28,229	207,733	202,410	△0.6
노인장기요양보험	△4,089	△6,688	△6,861	339	9,088	17,684	13,563	△6.4
합 계	400,184	380,496	363,655	431,241	655,817	7,007,521	10,407,544	10.4

자료: 각 소관부처

8대 사회보험 적립금 투자 동향

- 8대 사회보험은 적립금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거나 금융 이외 부문(복지부문, 대여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금 투자 수익은 보험료 수입과 함께 사회보험의 주요 수입원
 - 다만,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만이 적립금을 금융 이외 부분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각 연금별로 수익률 산출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융부문 투자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봄¹⁾
- 2021년 금융부문 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 10.79%, 공무원연금 8.1%, 군인연금 2.93%, 사학연금 11.95%, 고용보험 4.35%, 산재보험 7.03%, 건강보험 1.22%, 노인장기요양보험 1.18%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달성
 -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사학연금이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공무원연금은 8.5%, 산재보험은 9.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군인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

8대 사회보험 적립금 투자 현황: 금융부문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0	2019	3년('19~'21) 연평균	5년('17~'21) 연평균
	운용규모	수익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국민연금	9,481,060	912,119	10.79	9.72	11.33	10.59	7.92
공무원연금	81,055	7,527	8.1	9.6	8.0	8.5	6.0
군인연금	11,838	338	2.93	3.82	5.59	4.11	2.54
사학연금	234,933	24,738	11.95	11.49	11.15	11.53	8.28
고용보험	54,924	2,617	4.35	5.72	7.06	6.04	4.57
산재보험	193,046	15,329	7.03	11.20	7.70	9.40	5.10
건강보험	181,802	2,238	1.22	1.91	2.28	1.80	1.85
노인장기요양보험	16,590	194	1.18	1.41	1.99	1.53	1.64

주: 1. 군인연금의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평잔 기준

2. 고용보험 금융부문 운용규모와 적립금 간 차액은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1,563억원임

3. 산재보험 금융부문 운용규모와 적립금 간 차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 2조 8,931억원,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245억원임

자료: 각 소관부처

1) 2021년도 4대 공적연금 적립금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적립금	948.7	15.2	1.3	26.1
- 금융부문	948.1	8.1	1.0	23.5
- 금융 이외 부문	0.6	7.1	0.3	2.6
	(대부, 청풍리조트, 사옥운영)	(대부, 주택 및 사옥운영 등)	(부동산, 신탁사업수익권 등)	(대부, 사옥운영, 미수금 등)

자료: 각 소관부처

- 2021년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수익률 호조로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익률은 높은 반면, 국내채권 비중이 높은 군인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낮은 수익률을 기록

* 2021년 한국 증시(KOSPI): 3.63% 상승, 글로벌 증시(MSCI ACWI ex-Korea, USD 기준): 19.38% 상승

8대 사회보험 2021년 금융부문 자산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합 계
국민 연금	규모	1,658,077	2,566,248	3,399,907	638,963	1,193,054	24,811	9,481,060
	비중	17.5	27.1	35.9	6.7	12.6	0.3	100.0
	수익률	6.73	29.48	△1.30	7.09	23.80	1.10	10.79
공무원 연금	규모	12,701	10,511	23,637	5,396	20,910	7,900	81,055
	비중	15.7	13.0	29.2	6.7	25.8	9.7	100.0
	수익률	7.4	29.4	△1.2	△1.0	18.5	1.1	8.1
군인 연금	규모	762	1,102	6,791	504	97	1,623	11,838
	비중	6.4	9.3	57.4	4.3	0.8	13.7	100.0
	수익률	6.54	29.97	△0.19	△1.50	0.78	0.78	2.93
사학 연금	규모	44,791	55,038	68,077	13,552	49,987	3,488	234,933
	비중	19.1	23.4	29.0	5.8	21.3	1.5	100.0
	수익률	5.70	27.12	△1.16	7.88	25.03	0.75	11.95
고용 보험	규모	1,704	1,009	31,608	200	9,688	10,715	54,924
	비중	3.1	1.8	57.5	0.4	17.6	19.5	100.0
	수익률	4.13	30.93	△0.31	0.75	17.17	0.90	4.35
산재 보험	규모	29,712	26,370	97,420	8,000	23,155	8,389	193,046
	비중	15.4	13.7	50.5	4.1	12.0	4.3	100.0
	수익률	6.24	30.90	△1.47	△1.42	12.00	0.91	7.03
건강 보험	규모	-	-	111,289	-	2,634	67,880	181,802
	비중	-	-	61.2	-	1.4	37.3	100.0
	수익률	-	-	1.02	-	8.80	1.18	1.22
노인 장기 요양	규모	-	-	1,921	-	-	14,668	16,590
	비중	-	-	11.6	-	-	88.4	100.0
	수익률	-	-	1.49	-	-	1.15	1.18

주: 군인연금의 경우 확정금리 자산 959억원(2021년 수익률 1.04%)이 있으나, 표에 표시하지 않음

자료: 각 소관부처

- 해외 공적연금 수익률(3년 평균수익률)을 보면, 일본(GPIF) 6.4%, 캐나다(CPPIB) 10.7%, 미국(CalPERS) 10.7%, 네덜란드(ABP) 6.7%, 노르웨이(GPFG) 15.0% 수준

해외 공적연금 금융부문 투자 수익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0	3년('19~'21) 연평균	5년('17~'21) 연평균
	운용규모	수익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일본(GPIF)	19,125,022	3,883,164	25.2	△5.2	6.4	6.4
캐나다(CPPIB)	4,464,362	753,582	20.4	3.1	10.7	11.2
미국(CalPERS)	5,482,964	995,077	21.3	4.7	10.7	10.4
네덜란드(ABP)	6,628,771	409,501	6.6	16.8	6.7	7.5
노르웨이(GPFG)	16,571,386	2,121,782	14.5	10.9	15.0	10.2

주: 1) 각 연기금의 회계결산 월이 상이하여 2021FY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연기금은 2020FY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 수익금, 수익률을 작성

- 일본(GPIF),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의 경우 2020FY를 기준으로 2021년, 3년 연평균(2018~2020), 5년 연평균(2016~2020) 수익률을 산출함

2) 원화환산 시 적용 환율은 각 기금 결산 월말, 최초 매매 기준 환율(예: 일본 원/JPY: 1,130.8(2020.3월말))

3) 각 연기금의 수치는 산출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 비교할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작성(각 해외 연기금 연차보고서, KEB 하나은행 환율 고시)

- 해외 공적연금 자산배분을 보면, 주식, 채권, 대체투자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별로 투자 비중에 차이가 있음

해외 공적연금 금융부문 자산배분 추이

(단위: %)

구 분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G)	
	2017	2021	2017	2021	2017	2021	2017	2021	2017	2021
주식	50.8	51.1	38.8	29.2	44.0	49.0	35.3	33.1	66.6	72.0
채권	49.3	48.9	27.9	32.9	28.0	26.0	36.8	38.0	30.8	25.4
대체	-	-	33.3	37.9	28.0	25.0	28.0	29.0	2.6	2.6

주: 1) 각 기금의 자산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본(GPIF)의 경우 전체 자산 5% 이내로 대체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산 특성(위험-수익)에 따라, 주식과 채권 자산에 할당되며, 별도의 대체투자 자산군을 보유하지 않음, 일본(GPIF)의 단기자산은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에 포함 되어 있음

- 캐나다(CPPIB)의 경우, 주식, 채권, 신용물, 실물자산, 기타 자산으로 자산군을 구성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신용물+채권을 채권 비중으로, 이외 실물자산, 기타 투자관련 부채, 절대수익추구 전략은 모두 대체투자로 분류함

- 미국(CalPERS)의 대체자산은 실물자산 및 사모 주식, 채권을 의미하며, 대체자산에 단기자산을 포함한 수치임

- 네덜란드(ABP)의 대체자산은 부동산, 대체자산(사모펀드, 헤지펀드, 인프라, 상품, 기회펀드), 오버레이를 포함

- 노르웨이(GPFG)의 대체자산은 비상장 부동산 및 인프라를 의미함

2) 본 자료에서는 각 연기금에서 대체투자 자산군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전통 투자자산(주식, 채권) 및 단기(현금성 자산) 이외 나머지 자산을 대체투자로 임의·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작성(각 해외 연기금 연차보고서)

사회보험 재정수지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립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적정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사회보험의 중장기적인 재정수지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적자보전 성격의 국가 지원금²⁾은 2017년 11조 1,004억원에서 2021년 15조 9,299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17조 2,375억원 지원 계획
 - 국민연금³⁾은 2042년 수지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 전망(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사학연금은 2029년 수지적자 전환, 2049년 기금 고갈 전망(2020년 제4차 재정계산)
 -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인상³⁾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실업자 증가,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2018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환의무가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2020년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대응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누적차입금은 9조 3,581억원 규모로 적립금 수준(5조 6,487억원)을 초과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본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가상승 등 대내외 경제·금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의 위험관리와 적정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6788-4634)

2)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군인연금 적자보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

3) 2018년 1.3% → 2019년 1.6% → 2022년 1.8%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그동안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내역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코로나19 이전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 (1·2차) '19.12월~'20.1월, (3·4차) '20.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지원요건)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지원내용) 생계비용으로 50~150만원 지원
 - ※ (신규) 1~2차: 150만원, 3~4차: 100만원, (기수급자) 2~4차: 50만원

차수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구분	예산(인원)	1인당 지원액	지원인원	총지급액	지급시기
1차 (예비비, '20년 제3회 추경)	2조 792억원 (150만명)	150만원	149.7만명 (특고·프리랜서) 50.7만명 (영세자영업자) 93.7만명 (무급휴직자) 5.3만명	2조 717억원	'20. 6. ~ 9.
2차 ('20년 제4회 추경)	5,560억원 〈70만명 (기수급자) 50만명, (신규) 20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50만원	61.3만명 (기수급자) 47.2만명 (신규) 14.1만명	5,413억원	'20. 9. ~ 12.
3차 (예비비)	3,992억원 〈70만명 (기수급자) 65만명, (신규) 5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68.2만명 (기수급자) 57.1만명 (신규) 11.1만명	3,988억원	'21. 1. ~ 3.
4차 ('21년 제1회 추경)	4,563억원 〈80만명 (기수급자) 70만명, (신규) 10만명〉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71.5만명 (기수급자) 67.2만명, (신규) 4.3만명	3,864억원	'21. 3. ~ 5.

주: 1차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급, 2~4차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한 법인택시기사 지원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소득 감소 및 일정의 근속요건을 충족한 법인택시기사
 - ※ (1~2차) 3개월 연속 근무, (3차) 2개월 연속 근무, (4차) 2개월 연속 근무(7일 이내 근무공백 허용)
 - (지원요건) 매출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되고, 지원 공고일 기준 2~3개월 연속근무
 - (지원내용) 50~100만원 지급

차수별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지원현황

구분	예산(인원)	1인당 지원액	지원인원	총지급액	지급시기
1차 (’20년 제4회 추경)	810억원 (8.1만명)	100만원	79,673명	797억	’20. 9. ~ 12.
2차 (’21년 예비비)	400억원 (8만명)	50만원	77,494명	387억	’21. 1. ~ 3.
3차 (’21년 제1회 추경)	560억원 (8만명)	70만원	78,306명	548억	’21. 4. ~ 6.
4차 (’21년 제2회 추경)	640억원 (8만명)	80만원	74,748명	598억	’21. 9. ~ 1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2년 제1회 추경 등을 통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특고·프리랜서 지원(4,094억원, 68만명)
 - (지원대상)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다만, 전반적인 소득감소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
 - ※ (지원제외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지원요건)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지원내용)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지원(1,140억원, 7.6만명)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지원요건) 매출 또는 소득 감소
 - (지원내용) 150만원 일시 지급(1차 추경 100만원, 예비비 50만원)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을 통해 50만원 추가 지급

기수급자에 대한 소득요건 재확인 여부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는 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지원 차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감소 판단 시점과 현행 지원 시점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2차 지원부터는 기수급자에 대하여 소득감소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음
 - 이는 집행속도 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1차로 지원받은 수급자는 소득 감소 판단 시점과 현행 지원 시점 간 차이가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지원 시 소득요건 재확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2022. 2. 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
 -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목표와 추진방향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
-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전년 6,171억원 대비 18.9%(+1,169억원)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우주개발 계획 예산 확정
 - 위성개발 2,237억원(6.7%), 발사체 2,144억원(11.9%), 위성활용 1,137억원(0.7%), 한국형위성 항법시스템(KPS) 845억원(순증), 우주산업육성 446억원(50.7%), 우주탐사 299억원(△43.1 %), 우주혁신생태계 231억원(11.9%) 등
 - ※ 우주탐사 예산 감소는 달 탐사 사업의 전년대비 128억원(△39.2%) 감소와 달 착륙 핵심기술 및 행성탐사 임무 연구 등 4개 사업 종료에 기인
 - 우주개발 중점기술 국산화 및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해 우주산업육성 사업에 전년대비 50.7% 증가한 예산 편성

2022년도 우주개발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A)	2022(B)	증감	
			(B-A)	(B-A)/A
발사체	191,682	214,399	22,717	11.9
위성개발	209,737	223,686	13,949	6.7
위성활용	112,902	113,742	840	0.7
우주탐사	52,563	29,901	△22,662	△43.1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0	84,533	84,533	순증
우주혁신생태계	20,614	23,076	2,462	11.9
우주산업육성	29,626	44,640	15,014	50.7
합계	617,124	733,977	116,853	18.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전략1] 우주 발사체 기술 자립(2,144억원)
 - (독자적 수송능력 확보) 누리호 2차 발사('22.上)를 통한 한국형 발사체의 수송능력 검증 및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지원체계 지속 운영
 - (산업 역량 강화) '27년까지 한국형발사체 총 4회 발사 및 한국형 발사체 기술 이전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신규 추진
 - [전략2]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3,374억원)
 - (정밀지구관측) 다목적 6호(SAR) 발사('22.下, 한반도 전천후 관측), 다목적 7호(EO/IR) 비행모델 총조립, 7A호(EO/IR) 상세설계 수행 및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시제기) 광학탐재체 개발
 - (공공수요 기반 산업육성)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발사('22.12, 국토관리), 차세대중형위성 3호(우주과학 및 발사체 검증)·4호(농·산림 관리)·5호(수자원 관리) 및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재난·재해 대응, 해양환경 관측 등) 설계 수행
 - (위성활용 고도화) 주요 국가 위성을 하나로 통합 관제·운영할 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22.下) 및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22~'26) 신규 추진
 - [전략3] 우주탐사 달 탐사선 발사 및 우주감시(299억원)
 - (우주탐사)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22.8), 근지구소행성 아포피스 근접탐사 사전 연구
 - (우주관측) 근지구 우주환경(지구자기장, 고에너지 입자 등) 관측용 나노위성 4기 발사 및 운용
 - (우주감시) 우주위험 통합분석시스템 상세설계, 우주위험도 분석·평가·충돌완화 기술개발
 - [전략4]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845억원)
 - (사업 전담체계 마련) 과기정통부-연구재단 총괄협약, KPS 개발사업 본부 설치 등
 - (법적근거 마련)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전략5]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231억원)
 - (미래기술 개발)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 설계·제작 선행개발 신규과제 추진('22~'23) 등
 - (국제협력) 우주분야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 주요 신흥우주개발국 실무회의·워크숍 개최 등
- *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총회('22.6), 국제천문연맹 총회('22.8), UN 우주와 여성 워크숍('22.8) 등

- [전략6]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446억원)
 - (기술 국산화) 우주개발 중점기술 국산화 사업 확대, 민간기업 소형발사체개발 지원 등
 - (전문인력양성) 우주인력양성 산·학·연 협의체 구성,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5개소) 등
 - (우주산업 기반조성)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 참여 및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규모 우주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와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2022년도 전체 우주개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에 총 2,938억원(40.0%)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과기정통부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총 사업기간: '22~'27, 총 사업비 6,874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총 사업기간: '22~'35, 총 사업비 3조 7,235억원),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총 사업기간: '22~'30, 총 사업비 약 1조 3,700억원) 등의 대형 우주개발 신규 사업 착수
-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기반구축 필요
 - 민간기업 소형발사체 개발 지원을 위한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 우주분야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 등 민간 참여 촉진 지원 신규 사업 추진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민간 우주개발 촉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12.30, 정부 제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연구개발(R&D) 외에 기업 이윤을 보장한 계약방식 도입, 자체상금 한도 완화, 역매칭 대응 투자 방식 도입 등

2022년도 우주개발 신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2022	사업개요
발사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172,760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위성개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25,600	민군겸용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및 확보
위성활용	광학 위성영상 결측지역 보안을 위한 레이더 위성영상 공동활용 기술 개발	200	광학·레이더 위성영상 농경지 DB 구축 및 특성 평가, 농경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 공동활용 기술 개발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개발	5,720	위성정보의 다양화·부가가치화,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등
K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84,533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
우주산업육성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1,000	산업체 중심의 소형발사체 개발지원
	스페이스이노베이션	4,000	초소형위성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합계		293,8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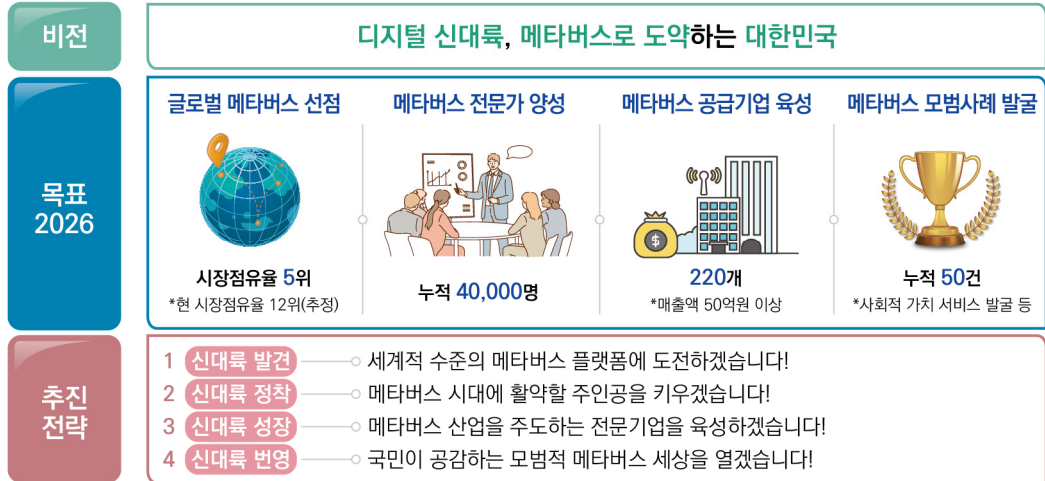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예산분석관(02-6788-4841)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2022. 1. 20.)

- 정부는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
 - 동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반영
 - ※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하며, 기술적·사회적·산업적 요인으로 인하여 최근 급부상
 - (기술적 요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 (사회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
 - (산업적 요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대두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①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② 메타버스 경제를 풍부하게 만들 플레이어 양성, ③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전문기업 육성, ④ 건강하고 모범적인 메타버스 사회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전략 추진 계획
 - ※ 한편, 빅테크 기업(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였고,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은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
-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① 신대륙 발견, ② 신대륙 정착, ③ 신대륙 성장, ④ 신대륙 번영의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추진 예정
 -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① 글로벌 메타버스를 선점(시장점유율 5위)하고, ② 메타버스 전문가를 양성(누적 4만명)하며, ③ 메타버스 공급기업을 육성(220개)하고, ④ 메타버스 모범사례를 발굴(누적 50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 2022년 추진과제 관련 총 예산은 약 5,560억원(펀드 조성 예산 제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주요 내용

- (전략1: 신대륙 발견)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①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지원, ② 메타버스 한류 콘텐츠 제작 지원, ③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④ 국제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 ⑤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 가속화
 -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①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 확보, ②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 지원, ③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개방

지역특화 메타버스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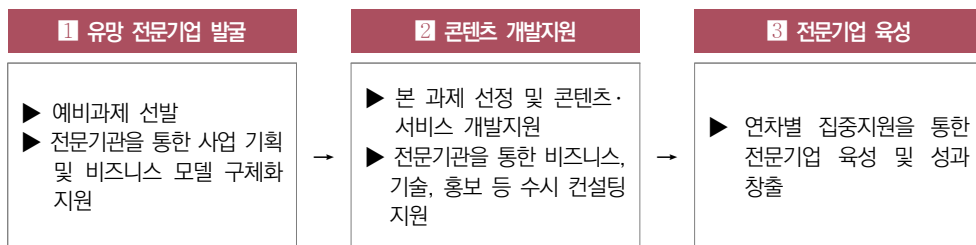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전략2: 신대륙 정착)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육성
 - (메타버스 인재 양성) ①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메타버스 전문대학원 및 랩 운영 등), ②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등), ③ 메타버스 창작자 성장 지원
 -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①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환경 지원, ② 메타버스 인식 확산 및 성과 공유, ③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사업화를 활성화
- (전략3: 신대륙 성장)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① 메타버스 통합지원 거점(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지역 XR제작거점 등) 구축, ② 메타버스 특화 시설 연계 지원
 -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① 메타버스 스타기업(메타버스 전문기업, 비대면 스타트업 등) 육성, ② 메타버스 펀드 투자 활성화, ③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교류 촉진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전략4: 신대륙 번영)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조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① 메타버스 윤리 정립(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및 이용자 보호 지원), ② 메타버스 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규제 기본원칙: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③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협력 선도
 -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① 시민 참여형 사회 혁신 지원, ②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뒷받침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 마련 및 민간·공공 간 협업체 강화 필요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이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과지표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사항 점검 필요
 - 대다수의 기업들은 메타버스 저작도구의 접근성 향상으로 메타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시점을 3~5년 내로 예상
 - ※ 메타버스 보편화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KDI): '3~5년 내' 69.9%, '6~10년 내' 14.8%, 그 외 응답 15.3%
 - 메타버스가 보편화되기까지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성장환경을 공공부문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 강화 필요
 - 기존 공공부문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홍보로 다수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주도,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책이 전달될 필요
 - 現 추진체계인 「메타버스 정책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민간부문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 「메타버스 정책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교육·행안·문체 등 관계부처 차관급, 관련 기업,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부처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세부 실행계획 논의, 다부처 협업 과제 발굴, 규제개선 등 민간 요구과제 검토 등을 수행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2022. 3. 7.)

- 중소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2022년 3월 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발표
 - 정부는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부는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함
 -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①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 ②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의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수립 배경

- 2022. 2. 2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격화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표면화 되면서 수년간 지속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우크라이나가 NATO가입을 영구배제하는 등의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 서방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
 - 서방국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 자산동결 및 SWIFT 결제망 퇴출 등 경제제재를 확대하였으며, 한국도 동참(2.28.)
- 무력충돌 발생으로 인한 시장불안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음
 - SWIFT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로 피해가 현실화됨
- 2021년 기준 러시아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액은 27.6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 중 10위 국가에 해당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은 3.3억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 중 37위 국가에 해당

러시아·우크라이나 중소기업 수출액 현황: 2019~2021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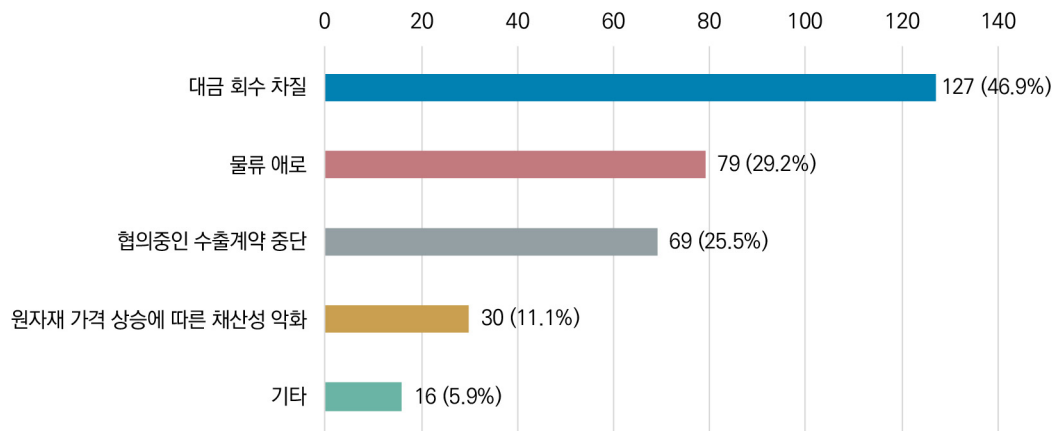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러시아	2,363	2,296	2,758
우크라이나	158	220	327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일정규모 이상 수출이 집중된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선제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339개사 중 79.9%(271개사)가 피해가 있다고 응답
 - 피해 사례로 대금 회수차질(46.9%), 물류애로(29.2%), 협의중인 수출계약 중단(25.5%) 등이 나타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종류(중복 응답)

(단위: 개사)



주: 21년 기준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① 수출액 10만달러 이상, ② 3개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 시행, 339개사가 응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주요 내용

- 자금지원·수출·물류·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대응책 마련 및 맞춤형 지원 실시
 - 피해기업 등에 긴급융자·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
 -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난, 환율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2022년 예산 2,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통제, 금융제재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 확대·보증비율 상향등 우대 보증
- 피해기업에 대하여 기존 용자·보증 만기연장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외의 대체 국가로 수출 다변화 지원
 -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담 무역전문가를 배정하고 “고비즈코리아”¹⁾에 등록된 해외 바이어를 연계, 구매알선 지원
 - 수출바우처 신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우대
 - * 수출바우처 : 디자인 개발·홍보·바이어 발굴 등 13가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패키지
- 일방적 거래 중단에 따른 물류비 손해를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 반송물류비, 지체료를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수출 피해기업을 두텁게 지원
- 중소기업 분야 수입·공급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관리
-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대한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선제적 관리
 - 고위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체계 수립
 - 종합 신고센터 60개소를 가동하여 피해내용 파악,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예산 및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여부를 고민할 필요
 - 피해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규모 및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 및 지원규모 산정 필요

1) Gobiz korea(<http://kr.gobizkorea.com>)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이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특정 목적을 정부가 정하고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성과평가까지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 간의 소모적 경쟁을 야기하는 한계가 있었음
 - 교육부는 2019년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 및 4개 사업으로 개편¹⁾하였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기존 5개²⁾의 목적형 사업을 통합한 것임
 - ※ 전문대학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2014~2018)을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1)으로 확대·개편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자료: 교육부

1)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

2)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스스로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구성원 참여하에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평가·관리하고,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그 결과를 최종 평가³⁾
 - 시행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은 네거티브 방식(명시된 집행불가 항목 외 자율집행)이며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3년 단위의 사업이며 2019~2021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1주기 사업'이라 함)은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
 - 교육부는 3년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여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진단의 결과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교육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학 2022. 2. 4. 전문대학 2022. 2. 14.)

- 교육부는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
 - 2주기 사업에서는 1주기 사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자율개선대학(I 유형)과 일부 역량강화대학(II 유형) 구분을 일반재정지원 유형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유형'을 신설하였음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2019~2021(1주기 사업)			2022~2024년(2주기 사업)	
일반 대학	자율개선대학(131교)	2021년 6,951억원	⇒ 통합	일반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대학(153교))	2022년 7,530억원
	역량강화대학 일부(12교)			↑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신설>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선정)	2022년 420억원
전문 대학	자율개선대학(87교)	2021년 3,655억원	⇒ 통합	일반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대학(104교))	2022년 4,020억원
	역량강화대학 일부(10교)				

자료: 교육부

3) 2·3차년도에 전년도(1·2차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 3차년도에 사업 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 분야(2022년)

부처명	세부 지원분야	연간 지원규모(백만원)	연간 지원대학(교)	연간 양성인원(명)
산업부	미래형자동차	9,128	15	720
	자원개발	831	5	120
	수소연료전지	1,130	3	60
	온실가스감축	1,445	10	240
	이차전지	2,878	5	100
	시스템반도체	9,776	30	1,200
	바이오헬스	3,131	5	125
과기부	AI반도체	1,141	3	150
복지부	의료인공지능	3,621	5	100
환경부	디지털물산업	2,172	3	90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478	2	40
	공간정보	1,215	8	320
개인정보위	정보보안	348	1	30
특허청	지식재산	4,706	50	1,000
총계		42,000	145	4,295

주: 2022년 사업 기간(8개월) 기준, 2023년도 이후 사업기간 변경(12개월)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예정
 자료: 교육부

- 2주기 사업은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 등 총 233교로서 319교의 진단 대상 대학 중 약 73%의 대학이 선정되었음

※ 이외에 교원양성기관⁴⁾ 11교, 2022년 상반기 중 추가⁵⁾ 선정 예정인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를 포함하여 총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전문대학 104교)가 최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임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이 사업 외의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⁶⁾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도 제한은 없음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결과

구분	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선정	233교	136교	97교
미선정	52교	25교	27교
미참여	34교	25교	9교
진단 대상	319교	186교	133교

주: 1. 미참여 대학에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참여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이 제한되나, 지자체 사업인 경우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2. 재정지원제한 대학(일반대학 9교, 전문대학 9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는 별개의 평가를 통해 지정됨

자료: 교육부

4)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은 별도 실시

5) 국회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를 추가 지원

6) BK21플러스 사업 등

- 2022년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일반대학 153교에 7,530억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 총 1조 1,5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별 규모 및 교육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포물러(자원배분산식) 사업비와 적정규모화 지원금(대학 1,000억원, 전문대학 400억원)으로 구성됨
 - 포물러 사업비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학부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하여 권역 별⁷⁾로 우선 배분 후, 권역별 배분액 범위에서 대학별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물러 100%로 대학별로 배분하는데, 이때 권역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의 권역 구분에 따름
 -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적정규모화에 수반되는 학사구조 개편, 학생 지원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3~2025년)을 수립한 대학에 지원함
- 2023년과 2024년에는 해당년도 사업비의 70% 내외를 포물러로 지급하며, 30% 내외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임
 -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 내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⁸⁾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방식인데,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의 S등급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 대학으로 보아 등급 가중치를 상향(1.5 → 1.6) 적용함
- 2주기 사업의 주요 특징을 1주기 사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음
 - 첫째,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1주기 사업에 비해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책무성도 함께 추구함
 - 이를 위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비 집행 제한을 더욱 완화⁹⁾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구간별 인센티브 가중치를 확대¹⁰⁾하였음
 - 이는 우수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성의 확대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임

7) 대학: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전문대학: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8) 등급별 대학 비율(안) : (대학) S(20%), A(20%), B(20%), C(20%), D(20%), (전문대학) A(20%), B(20%), C(20%), D(20%), E(20%)
등급별 배분 가중치(안) : (대학) (S) 1.5, (A) 1.3, (B) 1.1, (C) 1.0 (단, D등급은 미지급)

(전문대학) (A) 2.0 (B) 1.6, (C) 1.3, (D) 1.0 (단, E등급은 미지급)

9) 교원 개인 연구활동 지원비,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건물의 개축·중축·투자(전문대학은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기존 교직원인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총 사업비의 5%(전문대학 3%) 이내) 등을 기존의 집행불가 항목에서 제외(집행가능으로 변경)

10) 구간별 가중치 범위를 1주기 사업 1.2~1.0(전문대학 1.5~1.0)에서 2주기 사업 1.5~1.0(전문대학 2.0~1.0)으로 확대 및 최저등급 미지급

- 둘째, 지원 대상인 모든 대학에 대하여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하는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지충원율¹¹⁾을 점검함
 -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진단제외대학으로 구분하고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면서 자율개선대학(I 유형), 일부 역량강화대학(II유형)¹²⁾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1주기 사업) 하였음
 - 이에 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과 미선정대학으로만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2주기 사업)하면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규모 미충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 전반의 적정규모화 및 학사 유연화 등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조치임
- 셋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두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더욱이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유형에 선정되는 대학으로 하여금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자율혁신계획」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 전략적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2주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 스스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 따라서 재정지원이 성과 유인과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여 대학 교육역량 강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미충원에 대비한 정원의 적정규모화, 신산업 인재양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강만원 예산분석관(02-6788-3740)

11)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충원율(60% 반영), 재학생 충원율(40% 반영)로 구성(각 학년도 4월 1일 대학정보공시 자료 기준)

12) 2020년에는 본예산에서 ‘지역혁신형(III 유형)’, 제3회 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IV유형)’ 추가로 총 4개의 유형이 있었음. 2021년에는 다시 I·II유형만 지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확정

정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확정(2022. 3. 3.)

-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따른 그 간의 정책추진 내용 및 성과를 반영한 「2022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확정
 - 정부는 2019년 8월에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¹⁾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 제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과 자립화를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7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020.10.)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보완 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²⁾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③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을 제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³⁾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심의 후 확정
- 「2022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시행된 정책방향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 개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확대 및 신소재 투입 등으로 공급안정 실현, 100대 품목의 자체기술 확보,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한 수급 안정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등
 - ※ 100대 품목의 對일본 수입액 비중: 2019년 30.9% → 2021년 24.9%
 - ※ 수입 상위 국가 의존도 완화: 수입 상위 1~5위(중국, 미국, 일본 등) 의존도 합계 2019년 69.6% → 2021년 67.8%

1)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임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소재·부품·장비 R&D에 3.7조원(2019.9~2021)을 투입하여 2020년 말까지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특허 1,280건 달성 등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성장 지원: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 지원을 통해 으뜸기업 43개, 강소기업 120개, 스타트업 40개 선정·지원 및 투자펀드 1.6조원 조성 등
 - ※ 으뜸기업은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기술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강소기업은 지속적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펀드 2021년 1월 8,626억원 → 2021년 12월 1.6조원 조성
- 산업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협력모델 확산, R&D의 사업화 연계, 수요기업 설비 개방 등
 - ※ 다자간 협력기반 확대: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2019~2021년 403종 장비구축(2,510억원), 신뢰성 향상을 위해 1,505개사 지원(630억원), 양산성능평가를 위해 399개 과제 지원(1,150억원) 등
 - ※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평가 399건 지원(1,150억원) 및 중견기업 이상 수요기업 108개사 양산성능평가에 참여
- 첨단산업 클러스터 도약의 기반 마련: 특화단지 지정, 첨단투자지구 기반 마련 등
 -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경기도 반도체, 충남도 디스플레이 등) 지정(2021.2.)
-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 고도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021.11.), 소재·부품·장비 정책 및 통계 등을 제공하는 소부장넷 구축(2021.10.) 등
 - ※ GVC 재편 특별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신설되었으며, GVC 재편 동향, 산업대응 방향 검토 등의 역할 수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2022년 주요정책 추진 방향

-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 경쟁력 강화
 - 핵심전략기술 재편 및 기술투자 확대(R&D 투자액 2021년 2.2조원 → 2022년 2.3조원):
현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여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우주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분야까지로 핵심전략기술 자립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안보 및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R&D 핵심품목·미래공급망 창출·공급망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R&D 지원 확대
 - ※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산업적으로 중요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과 자립화를 위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
 - ※ R&D핵심품목은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對일본 100개와 글로벌 85개 품목으로 구성. 미래선도품목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65개 품목, 공급망관리품목은 공급망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을 포함

- 제조 소프트웨어 강화: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 및 AI서비스, 기초·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점 및 표준소재 개발, 해외기술규제 지원 등
 - ※ 미래선도품목의 기술난제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실 14개소 및 핵심품목 관련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소 신규 설치, 이차전지 전해질 등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표준물질 40개 개발 착수, 연내 5종(그래핀, 탄소섬유, 첨단세라믹스 등)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공고화
 -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 20개 이상 발굴, 기존 핵심전략품목 (對일 100개, 對전세계 338개 품목)에서 공급망 핵심품목까지 협력분야 확대
 - 생태계 인프라 강화: 기술개발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필요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지속(2022년 481억원), 신뢰성 바우처 활용 지원(2022년 213억원), 수요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 개선 지원(2022년 470억원) 등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공급망 위기관리 대응체계 개편: 2022년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석, 화합물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급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공급망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명확화, 공급망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설계 및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등
 -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소금속 원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 해외프로젝트 지원 및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으뜸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에 필요한 R&D·금융·실증·규제특례 등 지원, 강소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집중 지원
 - ※ 으뜸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년의 R&D 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및 규제 하이패스(15일 내 규제 개선여부 회신 등) 도입 등을 통한 지원 강화 계획
 - ※ 강소기업 전용 R&D(최대 20억원/4년), 보증(최대 30억원), 융자(최대 100억원) 및 스타트업 사업고도화 자금(최대 2억원), 융자(최대 100억원), R&D 과제 선정 시 가점제도 운영 등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2021년 2월 지정)에 대한 본격 지원, 주요 산업단지 등을 첨단투자지구로 신규 지정 등
 - ※ 5개 특화단지는 경기도 반도체, 전북도 탄소소재, 충북도 이차전지, 충남도 디스플레이, 경남도 정밀기계 단지
 - ※ 첨단투자지구 입주 기업에는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지역투자보조금 보조율 가산,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 계획

- 첨단 기술인력 유치 강화: 산업현장 맞춤형 소재·부품·장비 석·박사인력 1,355명 양성, 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분야 석·박사 정원 558명 증원,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재직자 교육기회 확대 등
 - ※ 석·박사 인력 양성: 2021년 16개 분야 1,011명(318억원 지원) → 2022년 21개 분야 1,355명(464억원)
 -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최대 3년)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최대 6년) 시 인건비 50% 지원
-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2022년 500억원) 및 유턴 보조금 지원 확대(2021년 500억원 → 2022년 570억원) 등

「2022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정책방향	세부과제	주요내용
핵심 소부장 품목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내재화	• 핵심전략기술 재편, 기술투자 및 부처협업 확대, 제조장비 혁신, 특허지원 강화, 개방형 기술확보(M&A 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 등
	제조 소프트웨어 강화	• 소재개발 디지털화, 기초원천기술 개발 강화, 무역 기술규제 정보제공, 해외인증 지원 등
소부장 생태계 구축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 협력모델 개선 및 공공기관 소부장 수요예보제 운영 등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 테스트베드 구축, 양산성능평가,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확대,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운영 등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공급망 위기 관리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소부장 품목 범위 확대, 정보분석 강화, 수급센터 기능 확대, 공급망 정보화, 디지털 물류망 구축, 국가별 및 품목별 다변화 지원,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 으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소부장 투자펀드 조성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 글로벌 R&D 확충, 기술교류 및 해외진출 거점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공급망 다변화 등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첨단 투자지구 도입 지원
	첨단 기술인력 유치 및 투자유치 강화	• 석박사 인력양성 지원,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공공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 해외인력 소득세 감면제도(세제특례 연장 검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022.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대내외적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 이후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별 성과를 면밀하게 검증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 2020년 2조 745억원 → 2021년 2조 5,541억원 → 2022년 2조 4,830억원
 - 소재·부품·장비 및 원재료 분야에서 공급망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체계적 운영으로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정부는 2021년 요소수 품귀에 따른 공급망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2021.11.)하고,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지정 및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
- ※ 조기경보시스템은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동향과 국내 수급상황을 양방향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외동향은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정부 정책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주력 품목의 경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수출·수급동향을 정례 보고하며, 국내에서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2022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2022. 1. 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창업지원 사업 정보 통합공고
 - 중앙부처(14개), 지자체(광역시 17, 기초 63개)를 통해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융자지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8개 사업, 3조 6,668억원 지원
- 201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2021년), 기초자치단체(2022년)가 모두 참여하고, 2022년부터 분산되어 있던 융자사업 정보까지 통합 제공
 - 광역지자체(885억원), 기초지자체(205억원)의 경우, 중앙부처(3조 5,578억원)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지만 지역별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을 수행하므로 정보의 일원화 필요
 - 융자사업(2조 220억원)의 경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반면에 주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강화 도모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 개정(2021.12)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정책의 전담부처 역할 수행
- 사업유형별 지원규모는 융자사업이 2조 220억원(55.1%)으로 가장 많고, 사업화(9,132억원), 기술개발(4,639억원), 시설·보육(1,549억원), 창업교육(569억원) 순
 -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많고, 시설·보육(96개), 행사(37개), 멘토링(32개), 창업교육(30개) 순

사업유형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융자	합계
예산	9,132	4,639	1,549	569	272	288	20,220	36,668
비율	24.9	12.6	4.2	1.6	0.7	0.8	55.1	100.0
사업 수	172	6	96	30	32	37	5	378
비율	45.5	1.6	25.4	7.9	8.5	9.8	1.3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세부 현황

-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 인재들을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지원
 -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¹⁾ 프로그램’을 전년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
 - ※ 20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 :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
 - ※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
-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지원 사업 제공
 -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
 -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 이내 청년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 등 지원
 -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
 - * 체재(플랫폼) 기업 등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마케팅·투자 등 협업을 통해 사업 고도화 지원
 - 지역 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 제공
 - ※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서울시, 13.7억원),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경북도, 21.8억원),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전남도, 37억원),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태안군, 0.2억원) 등

1)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기술 기반의 창업을 시작하려는 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는 총 14개 중앙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3조 3,131.2억원), 문화체육관광부(62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3.7억원), 고용노동부(318.8억원)가 주도
 - 2022년 통합공고 창업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1개 사업, 2조 1,766억원 증가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중소벤처기업부	40	44.9	11,790.1	85.4	45	45.0	33,131.2	93.1	5	21,341.1
융자제외시					43	-	13,131.2	-	3	1,341.1
문화체육관광부	11	12.4	491.6	3.6	14	14.0	626.8	1.8	3	13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1.2	457.7	3.3	9	9.0	533.7	1.5	△1	76.0
고용노동부	1	1.1	298.5	2.2	1	1.0	318.8	0.9	-	20.3
농림축산식품부	8	9.0	161.9	1.2	8	8.0	202.1	0.6	-	40.2
산림청	-	-	-	-	2	2.0	182.0	0.5	2	182.0
융자제외시					1	-	2.0	-	1	2.0
환경부	3	3.4	120.0	0.9	3	3.0	159.8	0.4	-	39.8
특허청	4	4.5	153.0	1.1	4	4.0	153.2	0.4	-	-
해양수산부	2	2.2	70.6	0.5	4	4.0	120.9	0.3	2	50.3
교육부	2	2.2	58.1	0.4	2	2.0	58.9	0.2	-	0.8
보건복지부	2	2.2	78.0	0.6	3	3.0	45.7	0.1	1	△32.3
농업진흥청	1	1.1	122.0	0.9	1	1.0	36.0	0.1	-	△86.0
법무부	1	1.1	8.4	0.1	1	1.0	8.4	0.0	-	-
국토부	3	3.4	0.7	0.0	3	3.0	0.8	0.0	-	0.1
기상청	1	1.1	1.6	0.0	-	-	-	-	△1	△1.6
합계	89	100.0	13,812	100.0	100	100.0	35,578	100.0	11	21,766
융자제외시					97	-	15,398	-	8	1,5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창업지원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에 따른 유기적인 사업 연계 지원 필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 개정(2021.12월)에 따라 신규 수립 예정인 “창업지원종합계획”(3년 주기)과 창업지원 사업간 전략적 추진체계 마련 및 연계 강화 필요
 - 창업지원 정책이 전담부처(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단순히 창업 지원 정보의 통합 제공을 넘어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 사업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매년 창업지원시행계획 수립·공고 예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 26.)
 -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해 평균 900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사고만인율은 0.48‰로 여전히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큰 상황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단위: 명, ‰, ‰p)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증감 (B-A)	평균
사고사망자수	964	971	855	882	828	△136	900
사고사망만인율	0.52	0.51	0.46	0.46	0.43	△0.09	0.48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2.3.15.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 규정 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벌금액도 피해에 비해 과소한 상황
- 산업안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지와 관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도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 1. 27.)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업무가 중요해짐
 -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
 -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됨

-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성 강화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2022. 2. 7.)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동법의 현장안전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 제고를 도모
 - 동 계획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50인(50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유해·위험요인을 고려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 •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유기적 협업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소규모 사업장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지속 추진 및 고도화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를 점검 및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 • 지방노동청의 지역밀착 중점감독 확대
본사·원청 중심의 예방 감독 강화	•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 개선 •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 • 2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감독을 기업단위로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 •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감독 인식 제고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 감독결과 언론 공개

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지속 추진, 패트룰 점검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 제고,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 확대
-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현재의 사후감독을 예방감독으로 개편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유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강화 필요

- 사망사고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강화 필요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3년 유예되었으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0%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 71.5%)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828	100.0	318	38.4	352	42.5	110	13.3	48	5.8
2020년	882	100.0	312	35.4	402	45.6	131	14.9	37	4.2
증 감	△54	0.0	6	3.0	△50	△3.1	△21	△1.6	11	1.6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2.3.15.

공사금액별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 %p)

구분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1억원		1~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417	68	16.3	62	14.9	168	40.3	35	8.4	35	8.4	43	10.3	6	1.4
2020년	458	42	9.2	66	14.4	223	48.7	28	6.1	60	13.1	31	6.8	8	1.7
증 감	△41	26	7.1	△4	0.5	△55	△24	7	2.3	△25	△47	12	3.5	△2	△03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2.3.15.

공공기관의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 현황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2021. 12. 30.)

-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
 - ※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검토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민간 자금의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의 기준이 됨

녹색활동 적합성 판단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활동기준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기준; Do No Significant Harm)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자료: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구 분	판단기준
녹색부문	•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온실가스 감축(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이산화탄소 포집 등),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 경제(자원순환, 메탄가스 활용), 오염(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방자처리), 생물다양성 분야로 구분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자료: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공공기관 녹색금융 조달 및 채권 발행 현황

- 녹색금융 조달을 위해 2021년에 녹색채권을 신규발행한 공공기관은 유형별로 정책금융기관, SOC 관련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 등으로 구분 가능

2021년 녹색채권 신규발행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

정책금융기관	SOC 관련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기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운송, 오염방지관리 및 에너지효율 등을 위하여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한국산업은행: 3,300억원 및 20억 3,800만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10억 달러 및 9억 8,200만 유로)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하여 1,35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정책금융기관의 2021년 녹색채권 신규발행 및 발행잔액 현황

기관명	국내채권 및 외화채권 신규발행 금액	녹색채권 발행잔액(2021년 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3,300억원 및 20억 3,800만 달러	3조 9,813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0억 달러 및 9억 8,200만 유로	3조 8,623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350억원	1,350억원

주: 외화적용환율은 2021년 말 매매기준율 기준

정책금융기관의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세부 현황

기관명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 목적
한국산업은행	7억 달러 / 3억 달러	2021.01.19. / 2021.03.09.	재생에너지, 친환경운송
	3,000억원	2021.03.25.	
	1억 달러 / 2억 1,800만 달러	2021.06.10. / 2021.07.22.	
	300억원	2021.10.07.	오염방지 관리, 에너지효율
	2,000만 달러 / 7억 달러	2021.10.12. / 2021.10.25.	재생에너지, 친환경운송
한국수출입은행	10억 달러	2021.10.19.	재생에너지, 청정수송, 지속가능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9억 8,200만 유로	2021.10.19.	
한국해양진흥공사	1,350억원	2021.11.29.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 SOC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가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녹색건물 투자에 대한 대환용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철도차량 구입용 기존채권을 녹색채권 신규발행(인천항만공사: 1,100억원, 한국철도공사: 3,000억원)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신축공사, 오수관로 개선사업, 소음대책사업 및 기존 채권에 대한 차환용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그린빌딩, 에너지 효율, 청정교통, 팬데믹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채권 발행(한국공항공사: 300억원, 한국도로공사: 5억 달러 및 500억원)
- ※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E)과 사회적채권(S)의 혼합형태

SOC 관련 공공기관의 2021년 녹색채권 신규발행 및 발행잔액 현황

기관명	국내채권 및 외화채권 신규발행 금액	녹색채권 발행잔액(2021년 말 기준)
인천항만공사	1,100억원	1,100억원
한국공항공사	300억원 (지속가능채권)	300억원 (지속가능채권)
한국도로공사	500억원 및 5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500억원 및 5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한국철도공사	3,000억원	3,000억원

SOC 관련 공공기관의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세부 현황

기관명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 목적
인천항만공사	1,100억원	2021.11.11.	기존 녹색건물 투자액에 대한 대환자금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채권)	300억원	2021.08.13.	공항 관리동 신축공사, 오수관로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소음대책사업 및 기존 공사채에 대한 차환 등
한국도로공사 (지속가능채권)	5억 달러 500억원	2021.05.17. 2021.10.21.	그린빌딩, 에너지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청정교통, 오염방지, 다양한 생물보전, 팬데믹 지원
한국철도공사	3,000억원	2021.04.14.	전기철도차량 구입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의 자회사가 2021년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사업, 환경설비 개선 등을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 (한국전력공사: 3억 달러, 한국남동발전: 5,900억원, 한국남부발전: 2,200억원 및 4억 5,000만 달러, 한국서부발전: 2,700억원)
 -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중부발전은 사회경제적 지원 및 신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채권 발행(한국수력원자력: 2,400억원, 한국중부발전: 1,500억원)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2021년 녹색채권 신규발행 및 발행잔액 현황

기관명	국내채권 및 외화채권 신규발행 금액	녹색채권 발행잔액(2021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3억 달러	13억 달러 및 8,000억원 (지속가능채권 포함)
한국남동발전	5,900억원	5,900억원 및 6억 달러
한국남부발전	2,200억원 및 4억 5,000만 달러	3,200억원 및 4억 5,000만 달러
한국서부발전	2,700억원	2,700억원 및 2억 프랑
한국수력원자력	2,400억원 (지속가능채권)	1조 1,400억원 (ESG채권 전체)
한국중부발전	1,500억원 (지속가능채권)	2,600억원 및 3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세부 현황

기관명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 목적
한국전력공사	3억 달러	2021.09.	신재생사업, 접속인프라개선, 전기차구입 등
한국남동발전	3,000억원	2021.01.26.	기존 REC 인증서 구매 비용에 대한 차환용
	2,900억원	2021.07.26.	환경설비 개선사업
한국남부발전	4억 5,000만 달러	2021.01.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및 소수력
	500억원	2021.06.	연료전지
	500억원	2021.07.	환경관련 설비보강
	1,200억원	2021.11.	
한국서부발전	2,700억원	2021.07.29.	신재생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400억원	2021.08.	사회경제적 지원 및 신재생사업
한국중부발전	1,500억원	2021.05.27.	신재생에너지(1,400억원) 및 사회경제적 지원(100억원)

- 이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1년 녹색채권을 신규발행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공사용으로 녹색채권 발행(한국수자원공사: 80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600억원)

SOC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세부 현황

기관명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 목적
한국수자원공사	500억원	2021.03.12.	수도권Ⅱ단계 노후관 개량('14~'22), 광역상수도 확충('18~'22), 공업용수도 확충('12~'21)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
	300억원	2021.08.04.	공업용수도 확충('12~'21), 스마트정수장 구축('20~'23), 광역정수장 탄소중립('21~'23)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
한국지역난방공사	1,600억원	2021.07.13.	열수송관 공사

금융공공기관의 녹색금융 투자 현황

- 2021년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무역보험공사, 사학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국민연금공단과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는 녹색금융 투자가 아닌 ESG금융 투자로 실시 (국민연금공단의 ESG투자 잔액: 126조 6,737억원, 무역보험공사 ESG 신규투자: 1,070억원, 한국투자공사 ESG 신규투자: 6억 7,600만 달러)
 - 사학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녹색금융투자와 ESG금융투자를 모두 진행 (사학연금공단- 녹색금융투자 1,700억원, ESG금융투자 1,34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녹색금융투자 1,999억원, ESG금융투자 100억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충족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녹색대출, 주식·채권에의 직·간접투자 등으로 녹색금융 투자 실시 (한국산업은행 12조 4,107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1조 3,243억원)

금융공공기관의 2021년 녹색금융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현황

기관명	2021년 신규투자 금액	투자잔액(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	126조 6,737억원(ESG금융)
무역보험공사	1,070억원(ESG금융)	1,170억원(ESG금융)
사학연금공단	1,700억원(녹색금융), 1,342억원(ESG금융)	2,200억원(녹색금융), 4,560억원(ESG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1,999억원(녹색금융), 100억원(ESG금융)	2,390억원(녹색금융), 101억원(ESG금융)
한국산업은행	12조 4,107억원	23조 3,05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1조 3,243억원	17조 3,370억원
한국투자공사	6억 7,600만 달러(ESG금융)	6억 7,600만 달러(ESG금융)

주: 국민연금공단은 자금특성상 연도별 신규투자잔액이 산출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투자잔액은 2021년 8월말 기준 수치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녹색금융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녹색금융 조달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채권 발행 기준이 국제 기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공기관 자체 기준 등으로 상이
 - 녹색금융 투자의 경우 녹색금융 투자나 ESG금융 투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2022. 2. 9.)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2년 신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제정·고시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출연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되, 2022년에는 사업준비기간을 감안하여 7,500억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편성 계획

(단위: 억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방소멸대응 기금 출연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7,500

주: 2022년에는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500억원만 편성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75%,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집중적으로 배분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조출생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선정된 인구감소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021.10.18.)한 바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 배분 기준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75%의 자원(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25%의 자원(광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기초지원계정은 자원의 95%를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할 예정임
 -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며, 나머지 5%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인구감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심지역¹⁾ 18곳에 지원될 계획임

-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기금 관리·운용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조합²⁾의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함
- 매 회계연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분류	시·도구분	지역수	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 지역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 지역	부산	2	금정구 중구
	인천	1	동구
	광주	1	동구
	대전	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1	익산시
	경북	2	경주시 김천시
	경남	2	사천시 통영시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2022.2.8.)

1)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기준으로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17개 시·도로 구성)



- 광역지원계정은 재원의 90%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집행하도록 하며, 나머지 10%의 재원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광역지원계정 재원의 90%는 인구감소지수,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을 고려한 산식³⁾에 의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배분되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게 됨
 - 나머지 10%의 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배분⁴⁾하되, 인구·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세종·인천·경기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기초자치단체가 2022년, 2023년 회계연도 사업의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2022년 5월까지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8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 배분기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력·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행정예산분석과 한예슬 예산분석관(02-6788-4639)

$$3) \text{ 해당 시도 배분 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 (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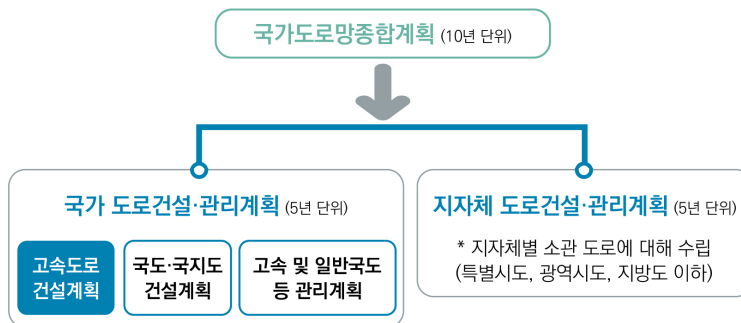
4) 강원·경북·전북·전남·충북에 50%, 경남·광주·제주·충남에 30%, 대구·대전·부산·울산에 20% 배분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발표(2022. 1. 28.)

-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체계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후속 계획 필요
 - 원활한 산업·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 모색
-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 반영 필요
 -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24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발표
 -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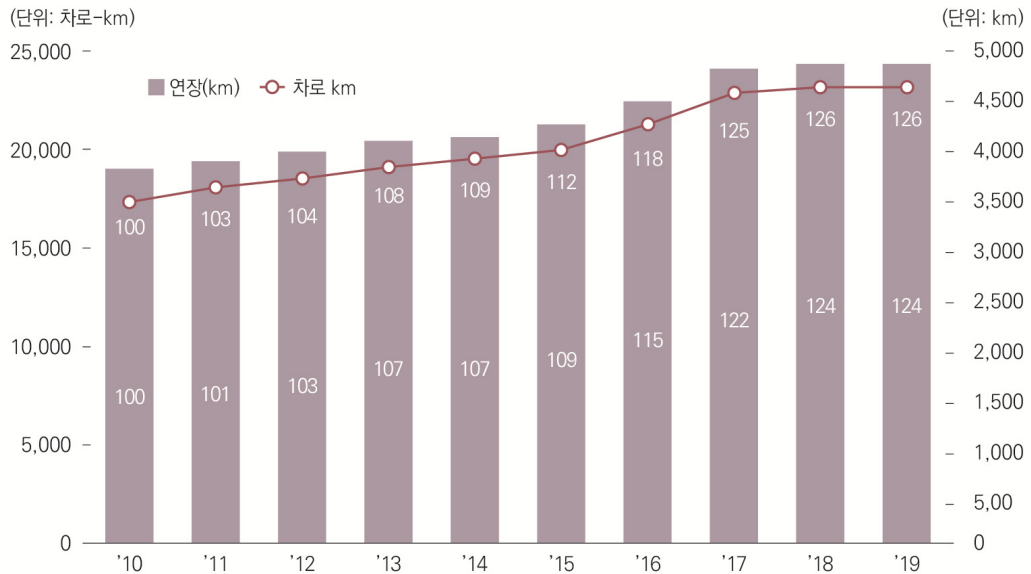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022, p.7.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현황

-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67km로 도로 총연장(111,314km)의 약 4.3%에 해당(2019년 기준)
- 고속도로 연장은 2010년 대비 약 1.2배, 연평균 약 2.1% 증가(2010~2019)하여, OECD 34개 국가들 중 10위 수준
※ 3,859km('10) → 4,193km('15) → 4,767km('19)
-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연장(47m/천km²)은 OECD 국가들 중 4위이며, 국토계수 당 고속도로 연장은 12위
※ 국토면적과 인구를 반영한 밀도 개념의 가중치 ($\sqrt{\text{국토면적}(\text{km}^2)} \times \text{인구}(\text{천명})$)
- 고속도로 규모를 고려한 연장(해당 구간의 차로수 × 연장, 차로 km) 규모는 22,670으로 2010년 대비 1.3배, 연평균 약 2.4% 증가(2010~2019)
※ 고속도로 차로·km: ('10) 17,929 → ('15) 20,027 → ('19) 22,670

고속도로 연장 및 차로·km 변동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022, p.11.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 지역균형 발전, ② 교통혼잡 완화, ③ 물류산업 지원, ④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
 -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신규사업 현황

구 분	신 설	확 장
합 계	19건, 770.4km(46.59조원)	18건, 349.1km(8.42조원)
① 균형발전	5건, 290.4km(14.67조원)	-
② 혼잡완화	5건, 133.4km(13.49조원)	18건, 349.1km(8.42조원)
③ 물류거점	5건, 148.8km(8.34조원)	-
④ 미래대비	4건, 197.8km(10.1조원)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
 - ※ 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
-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
 - ※ 대도시 광역생활권의 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순환망(6R)에서 방사축을 보완하여 방사형 순환망(6Radial Ring, 6R2)으로 재편
-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
-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추진계획 및 기대 효과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
-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
-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

타당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류산업 지원 및 남북협력 대비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타당성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정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2022. 3. 3.)

- 종합계획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
 - 제1차('17~'21)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만 2천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하였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
 - ※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 정부는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16개 과제 제시
 - ①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②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③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 지원, ④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⑤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5대 전략 및 16대 과제

비전	5대 전략	16대 과제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	1.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①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②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③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2.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①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② 지역 내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③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3.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④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① 지역 내 생산체계 안착을 위한 정착 단계별 밀착 지원 ②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기반 마련 ③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4.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①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 계획 제도화 ②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③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④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①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②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목표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5대 전략별 주요 내용에는 ①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준비 지원, ②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③ 청년 귀농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④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⑤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
 - ※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25, 170명) /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유통 등) 제공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
 -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중소벤처기업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월 최대 100만원(3년) / 지원 규모: ('21) 1,800명 → ('22) 2,000명
 -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 ※ 농촌공간정비사업: ('22) 40개소(개소당 5년간 140억, 국비 50%, 지방비 50%),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 지원
 -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
 - ※ ('22) 1단계 구축, 시범서비스 개시('22.12) → ('23) 2단계 구축, 본격 운영
- 정부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하여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달성을 목표로 설정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2018~2021년까지 총 992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적 총 5,953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200명 증가한 총 2,000명의 신규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산액 388억 9,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22~2025년까지 총 1,487억 8,900만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
 - 동사업에서 예정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장 3년이고 지급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농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있음
 -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충 청취와 애로점 해소, 교육과 컨설팅 제공 등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해외재정동향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발표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발표(2022. 1. 11.)

- 세계은행은 세계경제가 2022년 4.1%(2021년 대비 1.4%p 하락), 2023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2021년 6월 전망치 대비 2022년 0.2%p 하락, 2023년은 0.1%p 상승한 수준
 -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의 원인으로 COVID-19 재확산, 재정지원 감소,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현상 등을 지적
 - 2023년 세계경제는 회복 수요(pent-up demand) 감소, 경제 지원 정책 완화 등으로 성장률이 2022년 대비 추가 하향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생산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신흥·개도국은 낮은 백신 접종률,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한계,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지속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제 혼란, 공급망 병목현상 악화, 재정부담, 기후로 인한 재난, 장기 성장동력 약화 등 다양한 성장률 하방 요인이 존재
 - 신흥·개도국은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제한되므로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2022년 세계은행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2023f	2021년 6월 전망과의 차이		
						2021e	2022f	2023f
세계	2.6	△3.4	5.5	4.1	3.2	△0.2	△0.2	0.1

주: e는 추정치이고, f는 전망치

자료: World Bank, 「JANUARY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2.1. Table 1.1 발췌

※ 세계은행은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 다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음

※ 2022년 2월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은행은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을 추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선진국은 3.8%(2021년 6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신흥·개도국은 4.6%(2021년 6월 전망 대비 0.1%p 하향)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 (선진국) 오미크론 확산, 회복 수요의 점진적 감소, 재정·통화 지원 정책 중단, 공급 제약 점진적 완화 등에 따라 경제는 2021년 5.0% 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전체 3.8%(△0.2%p), 미국 3.7%(△0.5%p), 유로지역 4.2%(△0.2%p), 일본 2.9%(+0.3%p) 성장으로 전망치 조정
 - (신흥·개도국) 중국 성장 둔화, 팬데믹 영향 지속으로 인한 신흥·개도국의 내수 약화 등으로 전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6.3% 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신흥·개도국 전체 4.6%(△0.1%p), 중국 5.1%(△0.3%p), 러시아 2.4%(△0.8%p), 브라질 1.4%(△1.1%p), 사우디아라비아 4.9%(+1.6%p), 인도 8.7%(+1.2%p), 나이지리아 2.5%(+0.4%p) 성장으로 전망치 조정

2022년 세계은행 세계경제성장률(지역별) 전망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2023f	2021년 6월 전망과의 차이		
						2021e	2022f	2023f
세계	2.6	△3.4	5.5	4.1	3.2	△0.2	△0.2	0.1
선진국	1.7	△4.6	5.0	3.8	2.3	△0.4	△0.2	0.1
- 미국	2.3	△3.4	5.6	3.7	2.6	△1.2	△0.5	0.3
- 유로지역	1.6	△6.4	5.2	4.2	2.1	1.0	△0.2	△0.3
- 일본	△0.2	△4.5	1.7	2.9	1.2	△1.2	0.3	0.2
신흥·개도국	3.8	△1.7	6.3	4.6	4.4	0.2	△0.1	0.0
(동아시아·태평양)	5.8	1.2	7.1	5.1	5.2	△0.6	△0.2	0.0
- 중국	6.0	2.2	8.0	5.1	5.3	△0.5	△0.3	0.0
- 인도네시아	5.0	△2.1	3.7	5.2	5.1	△0.7	0.2	0.0
- 태국	2.3	△6.1	1.0	3.9	4.3	△1.2	△1.2	0.0
(유럽·중앙아시아)	2.7	△2.0	5.8	3.0	2.9	1.9	△0.9	△0.6
- 러시아	2.0	△3.0	4.3	2.4	1.8	1.1	△0.8	△0.5
- 터키	0.9	1.8	9.5	2.0	3.0	4.5	△2.5	△1.5
- 폴란드	4.7	△2.5	5.1	4.7	3.4	1.3	0.2	△0.5
(중남미)	0.8	△6.4	6.7	2.6	2.7	1.5	△0.3	0.2
- 브라질	1.2	△3.9	4.9	1.4	2.7	0.4	△1.1	0.4
- 멕시코	△0.2	△8.2	5.7	3.0	2.2	0.7	0.0	0.2
- 아르헨티나	△2.0	△9.9	10.0	2.6	2.1	3.6	0.9	0.2
(중동·북아프리카)	0.9	△4.0	3.1	4.4	3.4	0.6	0.8	0.1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2023f	2021년 6월 전망과의 차이		
						2021e	2022f	2023f
- 사우디아라비아	0.3	△4.1	2.4	4.9	2.3	0.0	1.6	△0.9
- 이란	△6.8	3.4	3.1	2.4	2.2	1.0	0.2	△0.1
- 이집트	5.6	3.6	3.3	5.5	5.5	1.0	1.0	0.0
(남아시아)	4.4	△5.2	7.0	7.6	6.0	0.1	0.8	0.8
- 인도	4.0	△7.3	8.3	8.7	6.8	0.0	1.2	0.3
- 파키스탄	2.1	△0.5	3.5	3.4	4.0	2.2	1.4	0.6
- 방글라데시	8.2	3.5	5.0	6.4	6.9	1.4	1.3	0.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5	△2.2	3.5	3.6	3.8	0.7	0.3	0.0
- 나이지리아	2.2	△1.8	2.4	2.5	2.8	0.6	0.4	0.4
- 남아프리카공화국	0.1	△6.4	4.6	2.1	1.5	1.1	0.0	0.0
- 앙골라	△0.6	△5.4	0.4	3.1	2.8	△0.1	△0.2	△0.7

주: e는 추정치이고, f는 전망치

자료: World Bank, 「JANUARY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2.1. Table 1.1 발췌

세계은행의 정책제언

- COVID-19 팬데믹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
 - 새로운 변이발생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제 정책 우선순위를 백신접종 가속화에 둘 필요
 - COVAX(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를 통한 저소득 국가로 백신 수송
 - 백신 수송과 대량생산 인프라 확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지역개발 은행들의 추가적인 금융 자원 제공
-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
 - 선진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부분의 신흥·개도국 경제는 장기 침체가 예상되므로 신흥·개도국에 유용한 재정 자원 확장 노력 필요
 -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금융위기와 장기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의 대외채무 재조정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COP 2021)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협력 필요
 - 신흥·개도국의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인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조달, 역량구축 지원 필요



EU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발표

EU 집행위원회,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발표(2022.2.)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2022.2.2.)하면서 당초 2020년 6월 발표하였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서 제외되었던 원자력발전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

※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등 EU가 설정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친환경·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EU의 위임법률(delegated act) 또는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¹⁾의 형태로 수립

- EU 녹색분류체계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은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저탄소 활동(low-carbon activities)’, ‘과도기적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 ‘지원 활동(enabling activities)’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동 법률안을 통해 승인된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는 ‘과도기적 활동’에 해당

EU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유형

구분	저탄소 활동 (low-carbon activities)	과도기적 활동 (transitional activities)	지원 활동 (enabling activities)
내용	기후변화 적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활동	완전한 저탄소 활동은 아니지만 산업 평균보다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저탄소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특정 활동
유형 (예시)	산림 복원,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무공해 운송수단 등	친환경 건물 개조, 에너지 효율적 제조활동(시멘트, 철강 등), 원자력발전, 액화천연가스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 저장, 최고 에너지등급 가전제품 제조 등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Non-paper on the TEG’s approach towards transition activities and enabling activities”(2019),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 taxonomy: Delegated acts on climate, and nuclear and gas”(2022)를 바탕으로 재정리

1) 위임법률(delegated act)과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은 기존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제정하는 시행령 성격의 하위법으로서, EU 집행위원회가 배타적인 제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통해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몰 기한과 정보 공개 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원자력발전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

구분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
원자력발전	신규 원자력발전소	•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3+세대 원자로 ²⁾)을 적용하고,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기존 원자력발전소	• 사용기한 연장이나 설비 개선은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방사성폐기물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既 운영 중이어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기술개발	• 안전기준 강화 및 방사성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4세대 원자로(예: 폐쇄형 연료주기(closed fuel cycle) ³⁾)가 적용된 첨단기술 연구개발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일몰조항 미적용
액화천연가스	개요	• 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를 활용한 기존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배출량별 조건 제시
	대상	• 가스연료를 활용한 1) 전력발전, 2) 열·냉각 및 전력의 고효율 열병합 발전, 3)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시스템을 위한 열·냉각 발전
	배출량별 조건	1) 전주기 탄소배출량이 100gCO ₂ e/kWh 미만인 경우 2) 2030년까지 전력 1kWh 생산 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270gCO ₂ e 미만 (충분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력생산 시 향후 20년간 연간 평균 배출량이 550kgCO ₂ e 미만인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 ※ 조건 2) 항목의 경우, 고체 또는 액체 화석연료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가스시설로 완전히 전환하는 경우,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등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 taxonomy: Delegated acts on climate, and nuclear and gas"(2022),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covering certain nuclear and gas activities"(2022)를 바탕으로 재정리

2) 제3+세대 원자로(Generation III+)는 1990년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인증을 받은 제3세대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원자로로, 소형 모듈원자로인 SMR(small modular reactor)을 포함

3) 폐쇄형 연료주기(closed fuel cycle):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여 새로운 핵연료로 만들어 다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방식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관련 향후 전망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최대 6개월간의 검토 후 표결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로 법률 시행 예정
 - ※ 향후 4개월간 검토 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2개월의 추가 검토기간 요청 가능
-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각 EU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안의 최종 채택 시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 기본적으로 동 법률안이 부결되기 위한 기준치가 높은 상황이나, 최종 확정된 녹색분류체계(안)에 대해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에서는 반대 입장을,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법률안 표결 시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녹색분류체계 보완 기후위임법률안」 표결 방식

구분	정책결정 방식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본회의에서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며, 법률안 부결을 위해서는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과반수 이상(353명)의 반대가 필요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강화된 가중다수결 방식에 따라 표결이 진행되며, 법률안 부결을 위해서는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20개 회원국의 반대가 필요

자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 taxonomy: Delegated acts on climate, and nuclear and gas"(2022)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 1 통권 제19호

발행일	2022년 4월 22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명문기획 / 02-2079-9200~2

© 국회예산정책처, 2022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